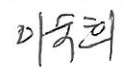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간 사	위원장	결 재
			박지현	이숙희	
개최일시	2022.04.20(수)	회의장소	행정관 605호 (온라인 병행 진행)		
		담당부서	기획처 예산팀		
참석자	이숙희, 송윤선, 박경옥, 권경미, 손유빈, 김연서, 최영은, 조지환, 윤지훈	기록자	예산팀 박지현		
		기록일	2022. 4. 20		
		불참자	김혜옥		
		추가참석	재무회계팀장 김태환		
안건	2021학년도 교비회계 결산 심사·의결				
회의자료	2022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붙임1. 2021학년도 교비회계 재무제표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심의사항	1. 개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회의내용 녹취를 공지하다. 2022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안내하고 재무회계팀장에게 2021학년도 결산 보고를 요청하다.				
	2. 회의내용 및 심의				
	가. 2021학년도 결산 보고 및 질의응답				
	재무회계팀장은 다음과 같이 2021학년도 결산현황을 보고하다.				
	■ 2021학년도 관별 본예산/추경예산액 대비 결산현황				
	■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현황				
	■ 2021학년도 적립금 적립재원 및 사용내역 현황				
	■ 연도별 경상수지 현황(2016년 ~ 2021년)				
	■ 자금계산서 수입 주요항목 연도별 증감내역 분석(2016년 ~ 2021년)				
	■ 자금계산서 지출 주요항목 연도별 증감내역 분석(2016년 ~ 2021년)				
- 학생위원(2)은 결산서의 등록금회계 기타학생경비 0원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다. 재무회계팀장은 기타학생경비는 등록금재원 아닌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의 학생 대상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비등록금회계 기타학생경비로 집계되며 등록금회계에서 0원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답변하다.					
- 학생위원(1)은 학생회비로 납부하는 1만원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로 표시되는지 질의하다. 교직원위원(2)은 학생회비는 기타예수로 처리하여 학생회로 송금하는 것으로 교비회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다.					
- 학생위원(1)은 학생지원비의 예산액과 결산액 차이 발생에 대하여 질의하다. 교직원위원(2)은 대형 국고사업으로 지원 등으로 대체되어 감소한 것으로 답변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간 사	위원장	결재
						
개최일시	2022.04.20(수)	회의장소	행정관 605호 (온라인 병행 진행)			
		담당부서	기획처 예산팀			
심의사항	나. 2022학년도 계절학기 수강료 책정 교직원위원(2)은 2022학년도 계절학기 수강료 책정(안)에 대하여 전년대비 동결하는 것으로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3)은 음대 전공실기 과목에 대하여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하다. 음대 전공실기 과목은 학점 및 시간에 관계없이 790,900원 책정되어있는데, 강의로 지급금액에도 못미치는 수준임을 설명하다. 또한, 학점대비 초과시간당 20,000원 추가 징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하다.					
	- 교직원위원(2)은 계절학기 강의로 지급금액 53,000원 기준으로 15주 계산 시 795,000원이므로, 음대 전공실기 과목 수강료를 강의로 금액 만큼으로 책정하는 사항에 대해 학생위원의 의견을 묻다.					
	- 학생위원(3)은 회의시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말하고, 음대 학생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기로 답변하다. [회의 종료 후 유선상 논의한 내용] 2022학년도 계절학기 수강료 인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음대 학생측의 의견 수렴에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학교 측도 보다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여 학생회 측과 서로 간에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학교 측은 현재 중간고사 기간임을 감안하여 금번 위원회에서는 학교 측의 최초 제시안대로 '2022학년도 계절학기 수강료 동결안'에 대한 위원의 찬반의견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함. 차후 학교 측에서 면밀한 검토 후에 계절학기 수강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학생 측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기로 함.					
	- 교직원위원(2)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시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의견 수렴 후 회신을 요청하다.					
	- 위원장은 교직원위원(3)에게 계절학기 강의로 관련 추가 의견이 있는지 발언을 요청하다.					
- 교직원위원(3)은 학점대비 초과시간당 2만원 추가 징수분에 대하여 추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간 사	위원장	결 재
						
개최일시	2022.04.20(수)	회의장소	행정관 605호 (온라인 병행 진행)			
		담당부서	기획처 예산팀			
설명하다. 예를 들어, 4학점 과목의 경우 폐강기준 최소 인원인 10명 기준으로 보면 277만원의 수강료가 발생하지만, 318만원 강사료가 지출되므로 강사료에 못미치는 수준임을 설명하다. - 학생위원(1)은 실습수업이 전체 과목 대비 소수의 과목이며, 학점대비 초과시간당 금액 역시 해당 단과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하기로 답변하다. 그리고 손실이 나는 초과학점 과목의 경우 학교측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상황인지 질의하다. - 교직원위원(3)은 전체적으로 개설되는 계절학기 수업을 보면 손실이 나는 구조는 아님을 설명하다. - 교직원위원(2)는 계절학기 수강료 동결 책정(안)에 대해 위원들의 찬반의견을 묻고, 전원 찬성으로 안건 통과하다. 다.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심의 교직원위원(2)은 다음과 같이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심의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 개정사유 ■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 - 교직원위원(3)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교내 규정인지 질의하다. - 교직원위원(2)은 상위법임을 설명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교내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답변하다. 4. 폐회 -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참석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 위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다음과 같이 날인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간 사	위원장	결재
개최일시	2022.04.20(수)	회의장소	행정관 605호 (온라인 병행 진행)			
		담당부서	기획처 예산팀			
		위원장	이숙희	(인)		
		교직원위원1	송윤선	(인)		
		교직원위원2	박경옥			
		교직원위원3	권경미	(인)		
		학생위원1	손유빈	(인)		
		학생위원2	김연서	(인)		
		학생위원3	최영은			
		학생위원4	조지환	(인)		
		전문가위원	윤지훈	(인)		
		동문위원	김혜옥	(인)		